

학점은행제 서식 작성 방법

01 학습자등록신청서(최초 1회 작성)

[별지 제4호서식]

합숙지등록신청서												
접수번호						접수일						
인적사항	성명	홍길동				주민등록번호			-			
	1 주소	□□□ - □□□ ○○도 ○○시 ○○동 111-111										
	연락처	☎ 자택		()								
		☎ 휴대폰		()								
		E-Mail				@						
3 희망 학위	☑ 학사 □ 전문학사					희망 전공	경영학		2 학위취득 희망시기	□ 2월 □ 8월		
4 환불계좌번호	(한국)은행 #○○○ - ○○○ - ○○○ (예금주 : 홍길동)											
5 최종출신교	△△대학						외국교육기관 국가명*					
최종학력	고졸	전문대학		전문대학 졸업		대학		대학 졸업	학력인정교			
		2년제 중퇴	3년제 중퇴	재학	2년제	3년제	중퇴		재학	중퇴	졸업	
6 희망학위 구분	☑ 학사학위(140학점) □ 학사학위(타전공 학위)** □ 전문학사학위(80학점) □ 전문학사학위(120학점) □ 전문학사학위(타전공 학위)**											

- ① 주소 :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지로 기재함.
- ② 학위취득 희망시기 : 학위취득 계획 시기를 기재함.
- ③, ⑥ 희망학위 및 희망전공 :
 -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의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기재(학점은행제 홈페이지 - 표준교육과정 참고)
 - 희망 학위에 따른 자격 구분

구분	희망 학위에 따른 자격
학사학위(140학점)	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학사학위(타전공 학위)	학사학위를 취득한 자(4년제 대학교 졸업자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전문학사학위(80학점)	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전문학사학위(120학점)	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※ 3년제 학위과정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'이료'전공에 한함.
전문학사학위(타전공 학위)	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4. **환불계좌번호** : 학습자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, 납부한 수수료를 환불받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함.
5. **최종출신교 및 최종학력** :
- 최종출신 학교명 및 학력내역 표기
(예 : 고졸 - ○○고등학교 / 전문대졸 - ○○전문대학 재학 · 중퇴 · 졸업 / 학력인정교 졸업 - ○○대학교 재학 · 중퇴 · 졸업 등)
 - 2개 이상 대학 중퇴 · 졸업시에는 최종 학력사항을 기준으로 작성

02 학점인정 신청서(학점인정 신청 시 작성)

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 <신설 2015.10.20.>

학점인정 신청서		
※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		
접수번호	접수일	
처리기간	60일	
인적사항	성명 학습자번호 또는 생년월일	
① 학점원 및 신청학점	학점원 신청 학점	
	1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이수	
	2.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점인정 대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이수	
	3.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	
	4.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에 등록 학습과목 이수	
	5.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	
	6.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 이수	
	7.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 교육 이수	
	계	

- ① **학점원 및 신청방법** : 학점원별 신청학점의 소개 및 총 신청학점의 합계를 기재함.
 (예) 시간제등록 21학점, 자격증 2종(각 16학점) 신청할 경우 : 「3. 시간제등록 학습과목 이수 - 신청학점 21학점, 「4. 자격취득 - 신청학점 32학점」기재하고, 「총계 53학점」기재

03

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(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과정 신청 시 작성) >

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신설 2015.10.20.>

1

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

2	학습구분	3	과목명	학점	4	종강년월일	5	교육훈련기관명
	전공		경영학개론	3		20XX. 3. 1		○○대학부설평생교육원

- ① **평가인정학습과정** :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과목
- ② **학습구분** : 「전필, 전선, 교양, 일선」으로 구분하여 기재
-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신청과목에 대한 학습구분을 기재함.
 - 전공교양호환과목의 경우 학습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구분을 선택하여 기재함.
 ※ 전공교양호환과목 :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[표준교육과정] → [전공교양호환과목]에서 확인

④ 학습구분

• **전공** :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(또는 학점)인 '전공필수'과목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'전공선택'과목으로 구분됨.
 • **교양** : 사회생활,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임.
 • 일반선택 : 희망 학위 및 전공과정의 전공 및 교양과목이 아닌 타 학위 및 전공의 전공과목임.

- ③ **과목명** : 학습자가 이수한 과목명을 정확히 기재함.
- ④ **종강년월일** : 학습과목의 종강년월일을 기재함.
- ⑤ **교육훈련기관명** : 학습과목을 이수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명 기재 (예 : ○○대학부설○○교육원 등)
- ※ 평가인정학습과정, 종강년월일, 교육훈련기관명 등의 정보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[마이페이지] - [미신청학점]에서 확인할 수 있음.

04

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 >

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신설 2015.10.20.>

1

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

2	학습구분	3	과목명	학점	이수년도/학기	기관명
	전공		전산회계	2	20XX / 1	○○대학교
	교양		영어회화 1	3	20XX / 1	□□대학

- ① **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** : 졸업 · 중퇴한 전문대학, 중퇴한 4년제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
- ② **학습구분** : 「전필, 전선, 교양, 일선」으로 구분하여 기재함.
- ※ 실제 학점인정결과는 학습자가 기재한 희망학습 구분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, 신청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근거로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학습구분이 결정됨.
- ③ **과목명** :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과목명을 정확히 기재함.

④ 주의사항

• 2년제 전문대학 중퇴 · 졸업 : 최대 80학점, 3년제 전문대학 중퇴 · 졸업 : 최대 120학점, 4년제 대학교 중퇴: 최대 140학점 범위내에서 학점인정 됨.
 • 인정 최대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일부 학습과목을 제외 또는 학점을 절사하여 신청할 수 있음.
 (예) 2년제 전문대학을 8학점으로 졸업한 경우: 1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을 제외하고 신청하거나, 1학점으로 이수한 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학점을 1학점 절사하여 신청가능함.

05

시간제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(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학습과목 신청 시 작성) >

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<신설 2015.10.20.>

1

시간제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

2	학습구분	3	과목명	학점	이수년도 /학기	기관명
	전공		아동발달	3	20XX / 1	○○대학교

- ① **시간제등록 학습과목** : 시간제등록으로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
- ② **학습구분** : 「전필, 전선, 교양, 일선」으로 구분하여 기재함.
- ※ 실제 학점인정결과는 학습자가 기재한 희망학습 구분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, 신청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근거로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학습구분이 결정됨.
- ③ **과목명** :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과목명을 정확히 기재함.

[별지 제12호서식]

1 학점인정 재심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60일	
인적사항	성명			학습자번호 또는 생년월일	
	주소			연락처	
재심 신청 학습 과목	2 기인정 학습구분	3 변경희망 학습구분*	4 이수 과목명	학점	5 인정 희망 과목명**
학점인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심을 신청합니다.					
				년 월 일	
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				신청인 :	(서명 또는 인)

※ 재심 신청학점 작성시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두 장 작성
※ 강의계획서 등 첨부하고자 하는 서류는 재심신청서와 함께 제출

- 1 학점인정 재심신청서 : 평가인정학습과정 외의 학점원(학점인정대상학교, 시간제)으로 이수한 과목의 학점 인정받은 학습구분에 대해 재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,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신청(재심의신청은 분기별 1번만 신청 가능하며, 방문 접수기간에만 접수가능)
- 2 기인정 학습구분 : 이미 인정받은 과목에 대한 학습구분 기재
- 3 변경희망 학습구분 : 학습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구분 기재
- 4 이수 과목명 : 재심신청 대상 과목명 기재
- 5 인정 희망 과목명 : 재심신청 대상 과목이 학습자가 진행하는 표준교육과정의 어떤 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지 '표준교육 과정에 고시된 과목명'을 기재
- ※ 재심신청의 경우, 반드시 학습자가 수강한 당시의 강의계획서(수강한 대학을 통해 자료 확보)를 확보하여 첨부해야 함(강의계획서에 해당 대학의 교무처 직원 및 학과장 등을 통해 해당 강의계획서가 원본임을 확인하는 직인 필요).

* 본 자료는 2017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, 이후의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(www.cb.or.kr)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 리플릿 PDF파일 다운로드 경로 : 홈페이지 → 알림방 → 자료실 → 간행물

* "학점은행제 첫걸음 동영상"오리엔테이션 콘텐츠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, 제도 이용 전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